

의안번호	제197호
의결 연월일	2011년 7월 일 (제 302 회)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1년 6월 30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년 6월 3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검사 수수료 반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, 일부 중복된 문구를 수정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수수료 반환 금지 문구 삭제 (안 제3조제4항)
- 수수료 반환 조항 신설 (안 제7조제2항)
- 시험용 검체 소요량 중 중복문구 등 수정 (별표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제3항의 여비는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에 따라 산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)

① 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험을 하여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제3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: 차액
2.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: 전액

별표의 식품류 검사 시험용 검체 소요량 난 제2호 중 “세균검사없는 항목 : 3개 이상”을 “세균검사있는 항목 : 6개 이상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뢰한 것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~③(생략) ④ 제3항의 여비는 「충청북도지방 공무원 여비지급조례」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3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~③(현행과 같음) ④ 제3항의 여비는 「충청북도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」에 따라 산정한다.</p>
<p>제7조(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) <u>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험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) ①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험을 하여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. ②제3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. 1. 시험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: 차액 2. 시험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: 전액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보건환경연구원법

- 제8조 (수수료 등) 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.
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참고자료

- 『사용료 등의 반환규정』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
(사용료 등 : 각종 공공시설의 사용료, 수강료, 제증명 수수료 등)

[미비점]

- 반환범위(금액, 비율)의 문제가 아니라, 반환하는 경우가 불분명하거나, 반환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재량적(유동적)임

[개선방향]

- 반환하는 경우 및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,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범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함
- 반환범위(금액, 비율)는 각 자치단체의 형편이나 공공시설물의 성격 등 제반 변수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할 수 있을 것임